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016-314호)

1 폐기물 재활용 기준

□ 폐기물 재활용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일부 강화

〈강화된 재활용 기준〉

구 분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기준(강화)
토양오염 우려기준	• 유형 : 성토재, 기층재 재활용(R-7-1) • 내용 : 재활용되는 **폐기물 또는 일반 토사와 혼합한 폐기물**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재활용 모니터링 기준	• 대상 : 성토재, 기층재 재활용(R-7-1), 석산 채석지역내 채움재(R-7-4) • 내용 : **매월 1회(사용 완료 후 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와 주변지역 지하수 및 지표수질과 지반안정도를 분석.조사**하여야 함

2 재활용환경성평가 의무화 대상

□ 성·복토용으로 “폐기물 **사용총량 2만톤, 면적 5천m^2 이상**”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 의무화

[제373회차('16.6.24 본위원회)]

□ 주요발언

○ (○○○위원) 환경부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폐기물 재활용 규제체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음. 네거티브 방식은 폐기물 재활용시 금지기준 또는 유해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라 할 것임. 그런데 재활용 허용 유형과 그에 따른 재활용 기준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로 부수되는 유해성이 각기 달라 공통의 금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 (○○○위원) 환경·안전 분야는 규제완화가 목적이 되어 규제완화에 치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며,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봄. 동 안에서 폐기물 재활용시 관리기준을 일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하여 환경상 위해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 (환경부) 현행의 재활용 기준 등 관리기준을 이번에 전면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며, 개별법의 규정이나 개별 관리기준 이외에도 공통 관리기준을 통해 충분히 안전한 관리가 가능함.

○ (○○○위원) 동 개정안 마련 과정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 (환경부) 동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산업계·환경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대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개정안 초안 마련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음.

○ (○○○위원) 석탄재를 성·복토재로 재활용시 모니터링 기준 적용과 관련한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이견에 대한 조정방안이 무엇인지?

→ (환경부) 석탄재는 배출량이 워낙 많고 위해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모니터링 기준 적용을 유예(2년)하고 그동안 연구를 통해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협의하였음.

○ (○○○위원) 재활용 기준에 맞추어 철강슬래그 등을 성토재·기층재로 재활용한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성토재·기층재로 재활용하는 폐기물 또는 일반 토사와 혼합한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등 환경상 위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외에도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적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폐기물을 성·복토재로 재활용한 부지에 대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우려기준 초과시 해당 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수단을 통해 성·복토재 재활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보이며 해당 신설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중복 규제에 우려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였음.

○ (○○○위원) 일반적으로 매립지의 경우 1미터 남짓 복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복토 재활용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인 경우 재활용량을 2만톤, 3만㎡인 경우 재활용량을 12만톤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재활용 폐기물 중량을 1.8톤으로 가정한 것도 적정한 것인지?

→ (환경부) 동 사업규모가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새만금 등에 성토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일반적 성토 높이인 2미터를 적용한 것임. 재활용 폐기물 중량을 1.8톤으로 산정한 것은 성·복토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비중을 참고하였음.

○ (○○○위원) 철강슬래그, 석탄재, 폐석분토사 등을 성토재·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되어 왔으며, 개정안에서도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환경부 안대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시행할 경우 재활용량의 약 90% 정도가 평가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사업규모를 상향조정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사업을 분할하여 허가를 받아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문제는 없는 건지?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소 사업규모인 3만㎡를 준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할 경우 전체 재활용량의 75% 정도가 여전히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무조정실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였음. 재활용사업을 분할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인접지역의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이 되므로 탈법행위 방지 가능.

○ (○○○위원)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의 협의안으로 제시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사업규모(12만톤, 3만㎡) 채택시 평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제도 시행이 촉박함으로 인하여 관계부처와 산업계에 무리하게 양보한 것은 아닌지?

→ (환경부) 당초 입법예고안(2만톤, 5천㎡)은 철강협회 등의 이견과 반발이 너무 커서 제도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따라서 기존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음. 이에 기존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진입장벽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안을 마련한 것임. 동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사업규모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 사업규모를 준용한 것임. 아울러,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 개정안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은 적용받게 되므로 환경상 위해가능성 문제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위원)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관련하여 피규제자 외에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 (환경부) 관계부처, 산업계와 함께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동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위원)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 시기 유예 의견과 관련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법 시행일은 7월 21일인데 이를 유예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 (환경부)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매체접촉형 재활용과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이 그 대상이 됨. 1년 적용을 유예한 것은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국한된 것이며,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할 것임.

○ (○○○위원) 새로운 방식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의존하게 되어 현재의 관리체계와 비교할 때 환경안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또한 나노세이프티처럼 신물질에 따라 새로이 부각되는 환경문제와 같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임.

→ (환경부) 재활용환경성평가 통과시 재활용 기준 없이 재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승인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재활용 기준과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조건을 붙여 재활용을 승인하게 됨.

○ (○○○위원) 환경분야 전문가 풀이 넓지는 않음. 또한, 승인위원회는 승인·의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 재활용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신기술 등 재활용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상 문제 해소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활용 환경성평가 수행 관련 전문인력 수급 등에 문제는 없는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교육을 통해 평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올해 1차로 28명이 동 과정을 수료하였음.

○ (○○○위원) 시대적 관점에서 재활용 관리의 전체 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현재의 체계는 기술의 발전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불법적 재활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따라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검증 후순위, 체제변화 선순위”와 같이 순환구조로 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관리기준 등 역할을 수행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의 기술적 검증체계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봄. 실행방법으로 우선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요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에 비추어 현재의 검증역량 수준을 비교하여 앞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역량 구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심의결과 : 개선권고**

<폐기물 재활용 기준 관련>

○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제외, 모니터링 기준 완화(매월 1회→분기별 1회 등)로 **개선권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의무화 대상 관련>

ㅇ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사업규모를 사업총량 12만톤, 사업면적 3만m^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 각종 인증(KS, 환경표지, GR 등) 등을 받은 골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제도시행 유예기간(1년)·재검토형 일몰(3년) 설정토록 **개선권고**

- 또한, 신기술 등 재활용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상 문제 해소가 가능한 안전틀을 확보하고,

· 재활용 가능여부 및 이에 대한 관리기준 등 역할을 수행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기술적 검증체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부대권고**